

안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184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9. 6./0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개정이유

- 상위법 개정으로 우리시 조례와 불부합하는 조문 및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법률 용어의 “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”에 따른 조문의 개정 필요

주요내용

- 가. “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”에 따른 조문의 개정(안 제1조, 제3조, 제4조, 7조, 9조, 11조).
- 나. 「폐기물 관리법」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2조, 제6조).

개정조례안 : 별첨

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

- 폐기물 관리법 제2조, 제27조제1항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입법예고결과 : 해당없음

- 「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호에 따라 생략

기타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안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에 따른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소각시킬 수 있는 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소각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안산시 자원회수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“자원회수시설”이라 함은 「폐기물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중 중간처리시설(소각시설)로서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.
2. “가연성폐기물”이라 함은 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소각시킬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폐기물의 처리) ①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은 안산시에서 발생하는 가연성폐기물 중 시장 또는 시장과 위탁 계약한 수집·운반업자가 수거한 폐기물에 한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각처리하지 아니하고 매립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.

1. 가연성폐기물의 발생량이 자원회수시설 용량을 초과하여 소각이 곤란한 경우
2. 자원회수시설의 보수·점검 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지할 경우

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자원회수시설의 관리·운영은 직영으로 하되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1. 「환경관리공단법」에 의한 환경관리공단
2. 「한국환경자원공사법」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
3. 당해 자원회수시설을 시공한 자
4.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·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운영자 지정을 받은 자
5.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
6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의하여 안산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
7. 「한국환경공단법」에 따른 한국환경공단

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각호의 1”을 각각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 제1항제1호,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법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
2. 불연성폐기물 또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한 경우
4. 제5조제1항에 따라 반입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

제7조제1항 중 “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4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① 시장은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(이하 “주민감시요원”이라 한다)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.

제11조 중 “제4조의 규정에 의한” 을 “제4조에 따른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4조제1항제7호는 2010. 1. 1.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2009.12.31.까지 효력을 갖는다.

소관 실·과		클린사업소
임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클린사업소장 이 기 용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청소시설담당 김 재 경
	담당자 성명·전화	송 기 선 (행정 2239)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1조(목적)</u>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소각시킬 수 있는 폐기물(이하 “가연성폐기물”이라 한다)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소각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안산시자원회수시설(이하 “자원회수시설”이라 한다)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<u>제1조(목적)</u> 이 조례는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에 따른 폐기물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소각시킬 수 있는 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소각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안산시 자원회수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<u>제2조(정의)</u>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“자원회수시설”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리시설(소각시설)로서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. 2. “가연성폐기물”이라 함은 제1호의 자원회수시설 안에서 소각시킬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. 3. ~ 4. (생략) 	<p><u>제2조(정의)</u> 1. 「폐기물관리법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8호에 따른 2. “가연성폐기물”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 소각시킬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. 3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<p><u>제3조(폐기물의 처리)</u> ①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안산시에서 발생하는 가연성폐기물중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과 위탁계약한 수집·운반업자 또는 시장이 직접 수거한 폐기물에 한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처리하지 아니하고 매립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2. (생략) 	<p><u>제3조(폐기물의 처리)</u> ① 처리하는 시장 또는 시장과 위탁계약한 수집·운반업자가 수거한 폐기물에 한한다. ②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<u><삭제></u> 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자원회수시설의 운영 등) ①자원회수시설의 관리·운영은 직영으로 하되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환경관리공단법</u>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2. <u>한국자원재생공사법</u>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 3. ~ 5. (생략) 6. <u>지방공기업법</u>에 의하여 안산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<p>〈신설〉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제4조(자원회수시설의 운영 등) ①</p> <p>..... 각 호의 어느 하나에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환경관리공단법」 2. 「한국환경자원공사법」 3. ~ 5. (현행과 같음) 6. 「지방공기업법」 <p>.....</p> <p>7. 「한국환경공단법」에 따른 한국환경공단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반입의 제한) ①시장은 제5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(업체) 또는 그 소속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체에서 보유한 차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. 불연성폐기물 또는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반입한 경우 3. (생략) 4.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경우 5. ~ 7. (생략) <p>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회수하여야 한다.</p>	<p>제6조(반입의 제한) ①</p> <p>..... 각 호의 어느 하나</p> <p>....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법 제27조에 따라 2.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3. (현행과 같음) 4. 제5조제1항에 따른 반입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5. ~ 7. (현행과 같음) <p>② 각 호의 어느 하나</p> <p>.....</p>
<p>제7조(지도·감독)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회수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위탁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고 지휘·감독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7조(지도·감독) ① 제4조에 따라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(주민감시요원) ①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(이하 “주민감시요원”이라 한다)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당해연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청사관리인부임에 준하는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9조(주민감시요원) ① 시장은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에 따라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
<p>제11조(권한의 위임)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권한중 일부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·운영수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.</p>	<p>제11조(권한의 위임)</p> <p>..... 제4조에 따른</p> <p>.....</p>